

의안번호	2210748
의 퇴 인	이상희의원
회 답 일	2025.8.4.
추 계 번호	25D3136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11조 5,791억원(연평균 2조 3,158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참전명예수당 인상	24,314	23,725	23,146	22,578	22,029	115,791	23,15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참전명예수당)	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이하 “기준 중위소득”이라 한다)으로서 1인 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함(제7항)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, 지급방법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8항)	의무규정
2	안 제10조 (고궁 등의 이용지원)	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·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참전명예수당)	○	-
5	안 제10조(고궁 등의 이용지원)	×	참전유공자의 고궁·공원 이용현황 자료가 부재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추계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가정
-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, 다른 보훈급여금 수급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나, 추계에서는 이로 인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음
 -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기준 94,593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보훈급여금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보훈급여금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하고 있으며,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보훈급여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 대부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다른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으나,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 다른 보훈급여금 신청자가 참전명예수당 수급을 선택할 수 있음
- 개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,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기간을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

가. 참전명예수당 인상(안 제6조제7항)

(1) 대상자 수

- 참전명예수당 수급대상자는 2024년 연말 기준 12만 190명이며, 최근 5년간 연평균 8.8% 감소

[표 2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현황

(단위: 명, %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감률
지급인원(명)	173,733	161,577	146,932	132,479	120,190	-8.8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 -8.8%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참전명예수당 수급자수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3]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수	91,171	83,148	75,832	69,159	63,07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2) 지급단가

- 최근 5년간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4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현황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액	320	340	350	390	420	450	7.1

자료: 국가보훈부

- 최근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 연평균증가율 7.1%를 적용하여, 현행법 적용 시 추계기간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5]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액	516	552	591	633	678	7.1

자료: 국가보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2,013원이며,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7.0%임

[표 6]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이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액	1,828	1,945	2,078	2,228	2,392	7.0

자료: 보건복지부

- 최근 5년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연평균증가율은 7.0%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

[표 7]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월 지급액	2,738	2,930	3,135	3,354	3,589	7.0

자료: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월지급액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, 추가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단가: 2027~2031년

(단위: 천원, %)

	2027	2028	2029	2030	2031	연평균증가율
개정안에 따른 참전명예수당(A)	2,738	2,930	3,135	3,354	3,589	7.0
현행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(B)	516	552	591	633	678	7.1
추가지급단가(A-B)	2,222	2,378	2,544	2,721	2,911	7.0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(3) 추가재정소요

- 개정안에 따라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급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11조 5,791억원으로 추계됨

[표 9]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 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참전명예수당 수급자(명)	91,171	83,148	75,832	69,159	63,073	-
추가 지급단가(천원/월)	2,222	2,378	2,544	2,721	2,911	-
추가재정소요(억원)	24,314	23,725	23,146	22,578	22,029	115,791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,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가재정소요는 11조 5,791억원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결과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참전명예수당 인상	24,314	23,725	23,146	22,578	22,029	115,79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참전명예수당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가정하고,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는 최근 5년간 증감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 -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기준 94,593명의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 보훈급여금,
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보훈급여금, 「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령하고 있으며, 현재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보훈급여금에 비해 금액이 적어 대부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다른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

-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, 다른 보훈급여금 수급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나, 추계에서는 이로 인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